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2006년 4월 28일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영등포구의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
- 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기능이 “윤리특별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 함(안 제8조 제5항)

□ 검토의견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외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등포구의 위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9. 8

보고자: 김 완 섭